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진선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6891

발의연월일: 2022. 8. 17.

발 의 자:진선미·민병덕·전혜숙

문정복・양향자・소병철

유정주 · 김철민 · 김경협

김병주 · 이원욱 의원

(119]

제안이유

최근 원유, 철광석, 펄프 등 원자재값 급등으로 인하여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제조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.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에 따르면, 2021년 연말 기준, 원유(나프타)값이 55.3%(2021년 1월 508.5\$에서 2021년 10월 789.6\$) 급등하였고, 철광석과 펄프는 각 172.2%, 55.5%의 변동율을 보임. 중소기업의 86.2%는 공급원가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함.

이처럼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'하도급대금 조정제도'를 두고 있음. 하지만, 조정협의를 위한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, 거래단절 등 보복조치 우려로 중소기업이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.

따라서 하도급대금에서 원자재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① 원자재 기

준가격 및 ② 하도급대금 조정 방법을 서면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, 거래 당사자간 자율적으로 원자재 가격과 하도급대금을 연동하여 원 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고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을 이룩하려 함.

주요내용

- 가. 하도급대금에서 원자재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원자재 기준가격을 서면에 기재하도록 함(안 제3조제2항).
- 나. 서면으로 정한 바에 따라 원자재 기준가격이 100분의 3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상승하는 경우, 원사업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하여 지급하도록 함(안 제16조의2제12항 신설).
- 다.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추가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5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"제16조의2제1항에"를 "제16조의2제1항 및 제12항에"로, "절차 등"을 "절차, 서면발급 당시 원자재 기준가격(하도급대금에서 원자재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경우에 한한다) 등"으로 한다.

법률 제18757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2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3조제2항의 서면으로 정한 바에 따라 원자재 기준가격이 100 분의 3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상승하는 경 우, 원사업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하 도급대금에 반영하여 지급하여야 한다.

법률 제18757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5조 제1항 중 "제16조의2제10항 및 제17조부터"를 "제16조의2제10항 및 제12항, 제17조부터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정 혅 행 개 아 제3조(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 제3조(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 존) ① (생 략) 존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 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 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 -----제16조의2제1항 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 및 제12항에-----건,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 면발급 당시 원자재 기준가격 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(하도급대금에서 원자재 가격이 [「전자서명법」 제2조제2호에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 한 따른 전자서명(서명자의 실지 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한다) 등----말한다)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 또는 기명날인하 여야 한다. ③ ~ ⑨ (생 략) ③ ~ ⑨ (현행과 같음) 법률 제18757호 하도급거래 공정 법률 제18757호 하도급거래 공정 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2(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제16조의2(공급원가 등의 변동에

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) ①
~ ① (생 략)
<신 설>

법률 제18757호 하도급거래 공정 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5조(시정조치) ① 공정거래위 저 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4항 까지 및 제9항, 제3조의4, 제3 조의5, 제4조부터 제12조까지, 제12조의2, 제12조의3, 제13조, 제13조의2, 제13조의3, 제14조 부터 제16조까지, 제16조의2제1 0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의 규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 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, 공시의무의 이행 또 는 공시내용의 정정, 법 위반행 위의 중지, 특약의 삭제나 수 정, 향후 재발방지, 그 밖에 시

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) ①
~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3조제2항의 서면으로 정
한 바에 따라 원자재 기준가격
이 100분의 3이내의 범위에서
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
상승하는 경우, 원사업자는 원
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추가로
발생한 비용을 하도급대금에
반영하여 지급하여야 한다.
법률 제18757호 하도급거래 공정
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제25조(시정조치) ①
체1
<u> </u>
<u> </u>
<u> </u>
,

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②・③ (생 략)

②・③ (현행과 같음)